※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

- 1.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
- 2.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
- 3.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(예: 2,000,000 - 1,000,000 = 1,000,000원)
- 4.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·증빙의 제출 및 신고·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
- 5.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풀이할 것

【문제 1】(25점)

다음은 거주자 갑, 을, 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.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,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.

(**물음 1**) 갑은 ㈜A에 상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25일에 퇴직하였다.

< 자 료 >

재직 기간(2021년 1월 1일~2021년 6월 25일)
 중 갑의 소득 자료

구 분	금 액
㈜A가 지급한 급여	30,000,000원
㈜A가 지급한 장기재직 공로금	5,000,000원
㈜A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*1	6,000,000원
㈜A가 지급한 사내 특강료	1,000,000원
㈜A가 지급한 사내소식지 원고료*2	600,000원
외부 거래처 특강료* ³	2,500,000원

- *1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보상금임
- *2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
- *3 거래처가 갑에게 지급함

2. 퇴직 후(2021년 6월 26일 이후) 갑의 소득 자료

구 분	금 액
㈜A가 지급한 퇴직금	9,000,000원
㈜A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*1	7,000,000원
㈜A 직원재교육 강연료	2,000,000원
㈜A 사원채용면접문제 출제 수당	1,000,000원
차량판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	500,000원
슬롯머신 당첨금품*2	1,500,000원

- *1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보상금임
- *2 1건에 해당하며 투입금액은 10,000원임

3. 근로소득공제

총급여액	근로소득공제액
1,500만원 초과	750만원+1,500만원을
4,5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5%
4,500만원 초과	1,200만원+4,500만원을
1억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5%

<요구사항 1>

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근로소득 총급여액	
기타소득 총수입금액	

<요구사항 2>

갑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	
종합소득금액	

세법

(물음 2) 거주자 을(54세, 한국 국적)의 2021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소득 내역

구 분	금 액	비고
근로소득	66,250,000원	총급여액 80,000,000원
이자소득	4,000,000원	예금이자로 원천징수됨

2.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

구 분	나이	내 용
부친	83세	소득 없음, 장애인
모친	79세	작물생산에 이용되는 논·밭 임대소득 6,000,000원
배우자	51세	소득 없음
딸	21세	소득 없음, 대학생
아들	15세	소득 없음, 중학생

3. 을의 소득공제 관련 내역

구 분	본인 부담분	비고
국민연금 보험료	5,000,000원	회사가 부담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됨
건강보험료	4,000,000원	
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	3,000,000원	을은 무주택자임

4. 신용카드 사용내역*1

사용내역	금 액
부친의 신용카드	5,000,000원
모친의 신용카드	4,000,000원
본인의 신용카드	15,300,000원* ²
배우자의 신용카드	10,000,000원* ³

- *1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%를 초과하지 않음
- *2 국외에서 결제한 금액 3,000,000원 및 대중교통 사용분 300,000원이 포함됨
- *3 전통시장 사용분 4,000,000원이 포함됨

5. 교육비 관련 내역

구 분	교육비 내역	금 액
부친	장애인 특수 교육비*1	2,000,000원
본인	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	1,500,000원
	대학원 등록금	4,000,000원
배우자	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	1,000,000원
딸	외국대학*2 등록금	10,000,000원
	교복구입비용	500,000원
아들	방과후학교 수업료	1,000,000원
	사설 영어학원 수강료	4,000,000원

- *1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급함
- *2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

6. 기부금 관련 내역

구 분	기부금 내역	금 액
부친	종교단체 기부금	500,000원
본인	수해 이재민구호금품	600,000원
는 인	노동조합 회비	300,000원

<요구사항 1>

을의 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인적	기본공제액	
공제액	추가공제액	
연금보험료·건강보험료·		
주택청약저	축 소득공제액	
신용카	드 등 사용	
소득공제액		

<요구사항 2>

을의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교육비 세액공제	
기부금 세액공제	

(물음 3) 거주자 병의 2021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이익

구 분	금 액
상장주식 매매차익	3,000,000원
주식 배당금	12,000,000원
양도가능채권 매매차손	△2,000,000원

2. 채권의 매매차익

구 분	금 액
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	20,000,000원
회사채 매매차익*	15,000,000원

- * 회사채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,000,000원이 포함됨
- 3. 병이 투자한 비상장법인 B로부터 받은 무상주

구 분	금 액
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	15,000,000원*
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	30,000,000원

* 지분율 상승에 해당하는 금액 2,000,000원이 포함됨

4. 기타 금융소득

구 분	금 액
직장공제회 반환금	50,000,000원*1
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	4,000,000원* ²
국내은행 지급 정기예금이자	8,000,000원
코스닥상장 C법인 인정배당*3	6,000,000원

- *1 직장공제회(2011년 가입) 납입원금은 45,000,000원임
- *2 원천징수 하지 않음
- *3 결산확정일은 2021년 3월 31일임
- 5. 제조업 사업소득금액: 20,000,000원

6. 종합소득세 기본세율

과세표준	세 율
1,200만원 초과	72만원 + 1,200만원을
4,6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%
4,600만원 초과	582만원 + 4,600만원을
8,8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%

<요구사항 1>

거주자 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이자소득 총수입금액	
배당소득 총수입금액	
배당가산액(Gross-up 금액)	

<요구사항 2>

거주자 병의 종합소득금액,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종합소득공제액은 20,000,000원으로 가정한다.

종합소득금액	
종합소득산출세액	
배당세액공제액	

【문제 2】(5점)

다음은 거주자 갑의 양도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- 갑은 2015년 4월 20일 취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2021년 12월 31일에 양도하였다.
- 2. 양도 시 오피스텔의 양도가액과 시가는 다음과 같다.

양도가액	시가
390,000,000원	400,000,000원

3. 양도 시 오피스텔의 장부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취득가액	감가상각누계액	필요경비
200,000,000원*1	120,000,000원* ²	25,000,000원* ³

- *1 노후된 오피스텔의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 15,000,000원이 제외됨
- *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임
- *3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중개인 수수료 13,000,000원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이지출한 명도비용 12,000,000원임
- 4. 양도한 오피스텔은 갑이 대주주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, 취득과 관련하여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20,000,000원이 있다.

<요구사항 1>

건물 양도로 인한 갑의 양도차익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양도가액	
취득가액	
기타의 필요경비	
양도차익	

<요구사항 2>

위의 자료 중 갑의 양도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A법인의 세무조정 시에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갑에게 인정소득이 처분되었다.

양도가액	시가
400,000,000원	300,000,000원

양도가액	

【문제 3】(20점)

(물음 1)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㈜한국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.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,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.

< 자 료 >

- 1. ㈜한국은 상품을 15,000,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 3,000,000원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. 상품은 7월 15일에 인도되었다.
- 2. ㈜한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㈜A에게 40,000,000원에 제품을 인도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. ㈜A는 인도받은 제품을 모두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.
- 3. ㈜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에 시가 10,000,000원의 제품을 공급하였다.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제품 중 90%를 해외구호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고 10%는 국내에서 사용하였다.
- 4. ㈜한국이 무상 공급한 내역이다.

7. 13	제품		비품
구 분	직매장반출* ¹	접대비* ²	복리후생비* ³
원 가	4,000,000원	600,000원	2,000,000원
감가상각 누계액			600,000원
시 가	6,000,000원	900,000원	1,300,000원

- *1 직매장에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됨
- *2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제공됨
- *3 2020년 12월 15일에 취득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대표이사의 가사용으로 제공하였음

- 5. ㈜한국의 기타 공급내역이다.
- ① 직수출로 2021년 5월 1일에 제품을 선적하고 받은 대가는 다음과 같다.

일 자	받은 대가	기준환율
2021.4.20.	\$12,000*1	1,000원/1\$
2021.5. 1.	_	1,100원/1\$
2021.6.25.	\$5,000*2	1,050원/1\$
2021.6.30.	_	1,150원/1\$

- *1 \$12,000 중 \$10,000는 즉시 환가하였고, \$2,000는 과세 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음
- *2 \$5,000는 대가수령 즉시 환가하였음
-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검수조건부 수출로 갑과 을에게 공급한 내역이다.

구 분	갑	이민
거래액	18,000,000원	3,000,000원
인도일	2021.3.10.	2021.4.15.
검수일	2021.6.18.	2021.6.30.
내국신용장개설일	2021.6.30.	2021.7.30.

<요구사항>

㈜한국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 해야 할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-1 -1 11 -	과세표준		
자료번호	과세	영세율	
1			
2			
3			
4			
5 - ①			
5 - ②			

(물음 2) 다음은 수산물도매업과 통조림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㈜대한(중소기업 아님)의 부가가치세 관련자료이다. 단,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, 세금계산서 및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.

< 자 료 >

예정신고기간 중 면세수산물 매입액은 없었고,
 2021년 제1기 중에 면세수산물의 매입 및 사용내역은
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원)

그ㅂ	금액	당기 사용내역		
구분 	р Ч	과세	면세	과세+면세
기초	8,000,000	1,850,000	6,150,000	_
매입	63,400,000	14,400,000	5,000,000	40,000,000
기말	4,000,000			

- 2. ㈜대한은 2021년 4월 15일에 수산물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트럭 2대 (취득가액 합계 100,000,000원)를 구입하였다. 이 중트럭 1대(취득가액 40,000,000원)를 2021년 6월 30일에 처분하였다.
- 3.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수산물도매업	통조림제조업
2020년 제2기	90,000,000원	110,000,000원
2021년 제1기	80,000,000원	120,000,000원
2021년 제2기	90,000,000원	90,000,000원

4. ㈜대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/102이다.

<요구사항 1>

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트럭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액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재계산액이 납부세액을증가시키면 (+), 감소시키면 (-) 부호를 금액과 함께기재하시오.

(답안 양식)

매입세액공제액	
재계산으로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	

<요구사항 2>

㈜대한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다음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의제매입세액 공제액(추징액 차감 전)	
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중 추징액	

(물음 3)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㈜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㈜대한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48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일괄양도하였다. 양도일에 건물 및 부속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, 감정평가액은 없다.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원)

구 분	기준시가	취득원가	장부가액
건물	100,000,000	200,000,000	200,000,000
부속토지	134,000,000	400,000,000	270,000,000
합계	234,000,000	600,000,000	470,000,000

2.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과세공급가액	면세공급가액
2020년 제2기	60%	40%
2021년 제1기	70%	30%

<요구사항>

㈜대한이 일괄양도한 건물 및 부속토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 하시오.

(답안 양식)

구 분	공급가액	과세표준
건 물		
부속토지		

(물음 4)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㈜태백의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- 1. ㈜태백의 신임담당자는 2021년 제1기 신고내역을 검토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.
- ① 2021년 6월 20일에 공급한 과세공급가액 4,000,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, 이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. 이러한 누락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다.
- ② 2021년 6월 10일에 공급받은 과세공급가액 1,000,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확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.
- ㈜태백은 위의 매출 및 매입 누락을 2021년 7월
 31일에 수정신고하였다.

<요구사항>

㈜태백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가산세액이 없는 경우 "없음"으로 표시하시오.

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	
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	
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	
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	

【문제 4】(25점)

(물음 1)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㈜백두(영리내국 법인)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.*1

구 분	임대면적	임대기간	보증금*2
상가	750m²	2021.4.1.~2022.3.31.	600,000,000원
주택	250 m²	2021.4.1.~2023.3.31.	400,000,000원

- *1 임대건물은 단층으로 해당 부속토지는 2,000㎡이고, 상가부속토지와 주택부속토지의 구분은 불가능하다.
- *2 상가임대보증금은 2021년 3월 16일에 수령하였으며, 주택임대보증금은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다.
- 2. 상가임대료로 매월 말 3,000,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,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하여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. ㈜백두는 제21기에 미수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.
- 3. 주택임대료로 매월 말 5,000,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, 실제로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월임대료의합계인 120,000,000원을 임대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수령하였으며, ㈜백두는 이를 전액 임대료수익으로회계처리하였다.
- 4. 임대용 건물을 350,000,000원(토지가액 100,000,000원 포함)에 취득 시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 50,000,000원이 발생하였다. 건물에 대한 지출은 상가분과 주택분 으로 구분할 수 없다.
- 5. 상가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은 수입이자 2,000,000원과 신주인수권처분이익 500,000원이며, 주택임대 보증금의 운용수익은 수입배당금 1,000,000원과 유가증권처분손실 1,500,000원이다.
- 6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.2%이다.

<요구사항 1>

㈜백두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며,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한다. ㈜백두의 제21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린다.

(답안 양식)

익금산역	입 및 손	금불산입	손금산역	입 및 익	금불산입
과목	금액	소득처분	과목	금액	소득처분

<요구사항 2>

㈜백두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며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제21기 간주임대료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소수점 이하금액은 버린다.

간주임대료		
-------	--	--

(물음 2)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㈜소백(중소기업)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.

< 자 료 >

- 1.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5,000,000,000원이며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- ① 영업외손익에 부산물 판매액 1,500,000,000원이 계상 되어 있다.
- ② 당기말에 수탁자가 판매한 10,000,000,000원을 제22기 초 대금회수시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.
- ③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,000,000,000원이 포함되어 있다.
- 2.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189,000,000원이다. 이 중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2,500,000원이며 그 외의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건당 3만원 이하	건당 3만원 초과	합 계
영수증 수취건	1,500,000원	12,000,000원	13,500,000원
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건	16,000,000원	85,000,000원*	101,000,000원
세금계산서 수취건 10	10,000,000원	62,000,000원	72,000,000원
합 계	27,500,000원	159,000,000원	186,500,000원

- * 임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금액 5,000,000원이 포함됨
- 3.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.
- ①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100곳에 개당 8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의 시계를 광고선전품으로 제공한 금액 8,000,000원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였다.
- ② 자체 생산한 제품(원가 3,000,000원, 시가 5,000,000원)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.

(차) 복리후생비 5,000,000 세금과공과 500,000

(대) 제품

3,000,000

잡이익

2,000,000

부가세예수금 500,000

- ③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15,000,000원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.
- 4.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

적용률
0.3%
0.2%
0.03%

<요구사항 1>

(주)소백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부인대상 접대비 해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_	
---	--

<요구사항 2>

<요구사항 1>의 정답과 관계없이 시부인대상 접대비해당액을 200,000,000원으로 가정하고 ㈜소백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접대 한도		수입금액	
계신	, I	접대비 한도액	
접대비		비 한도초과액	

(물음 3)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㈜한라(중소기업 아님)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.

< 자료 >

- 1. ㈜한라의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.
- ① A사립대학 장학금: 100,000,000원*
- * 장학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어음의 결제일은 2022년 3월 1일임
- 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: 50,000,000원
- ③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: 6,000,000원*
- * 생산한 제품을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(특수관계 없음)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것으로, ㈜한라는 동 제품의 원가 6,000,000원(시가 10,000,000원)을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계상함
-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구호금품: 25,000,000원
- ⑤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: 4,000,000원
- 2. ㈜한라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(특수관계 없음) 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10,000,000원인 비품을 15,000,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.
- 3. 제20기의 세무조정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: 10,000,000원
- ② 비지정기부금 부인액: 5,000,000원
- 4. 제19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120,000,000원이다.

<요구사항 1>

㈜한라의 제21기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 단,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익금산역	입 및 손	금불산입	손금산역	입 및 익	금불산입
과목	금액	소득처분	과목	금액	소득처분

<요구사항 2>

(쥐한라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이 400,000,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당기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(미달)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법정기부금 해당액	
지정기부금 해당액	
법정기부금 한도초과(미달)액	
지정기부금 한도초과(미달)액	

(물음 4)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㈜설악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료 >

1. ㈜설악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의 당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.

퇴직연금충당금

당기상계	200,000,000원	전기이월*	450,000,000원
차기이월	570,000,000원	당기설정	320,000,000원
<u>합</u> 계	770,000,000원	합 계	770,000,000원

- * 전기말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의 부인누계액 (유보)은 50,000,000원임
- 2. 당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.
- (차) 퇴직연금충당금 200,000,000퇴직급여충당금 30,000,000(대) 퇴직연금운용자산 230,000,000
- 3. ㈜설악의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.
- ① 보험수리적기준: 910,000,000원
- ② 일시퇴직기준: 900,000,000원
- 4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.

퇴직연금운용자산

전기이월	450,000,000원	당기지급*	230,000,000원
당기예치	410,000,000원	기말잔액	630,000,000원
 합 계	860,000,000원	합 계	860,000,000원

- * 당기지급액은 모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됨
- 5.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은 100,000,000원이며,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(유보)은 20,000,000원이다.

<요구사항 1>

㈜설악의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익금산역	입 및 손	금불산입	손금산약	입 및 익	금불산입
과목	금액	소득처분	과목	금액	소득처분

<요구사항 2>

㈜설악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. <자료> 중 1번은 고려하지 않으며, 2번의 분개 중 '<u>퇴직연금충당금'</u>을 '<u>퇴직급여'</u>로 한다. 전기말 현재 신고조정에 의한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액(△유보)이 400,000,000원일 때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 하시오.

익금산역	입 및 손	금불산입	손금산역	입 및 익	금불산입
과목	금액	소득처분	과목	금액	소득처분

【문제 5】(15점)

(물음 1) 제조업을 영위하는 ㈜한국(영리내국법인)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㈜한국은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반품가능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. 매출원가율은 60%를 유지하고 있으며, 전기말 반품추정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 익금산입・손금불산입		손금산입 • 익금불산입
매출	30,000,000원	_
매출원가	_	7,500,000원*

- * 반품자산 예상가치는 30,000,000원×25%임
- 2. 2021년 반품내역은 다음과 같다.
- ① 전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: 18,000,000원
- ② 당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: 120,000,000원
- 3.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매출 중 반품추정액은 35,000,000원이며, 반품자산의 예상가치는 매출액의 25%이다.
- 4. ㈜한국의 2021년 반품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.
- ① 전기말 반품추정액의 반품기간 종료가. 환불충당부채 회계처리
 - (차) 환불충당부채 30,000,000

(대) 매출채권18,000,000매 출12,000,000

나. 반환제품회수권 회계처리

(차) 제 품 4,500,000

매출원가 3,000,000

(대) 반환제품회수권 7,500,000

② 당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 가. 반품의 매출 및 매출원가 회계처리

(차) 매출 120,000,000 제품 72,000,000

(대) 매출채권 120,000,000

매출원가 72,000,000

나. 반품된 제품의 평가손실 회계처리

(차) 제품평가손실 42,000,000

(대) 제 품 42,000,000

③ 당기말 반품추정액 회계처리

(차) 매 출 35,000,000

반환제품회수권 8,750,000

(대) 환불충당부채 35,000,000

매출원가 8,750,000

5. ㈜한국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.

<요구사항>

㈜한국의 반품조건부 판매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		손금산	입 및 역	ļ금불산입	
과목	금액	소득처분	과목	금액	소득처분

(물음 2) 제조업을 영위하는 ㈜한국(중소기업)의 제21기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)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1. ㈜한국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금 액
당기순이익	250,000,000원
(+)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	200,000,000원
(-) 손금산입·익금불산입	120,000,000원*
각사업연도소득금액	330,000,000원

- *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 대상금액 20,000,000원이 포함됨
- 2. ㈜한국의 법인세법 상 비과세소득은 45,000,000원이다.
- 3.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며, 제10기에 발생한 15,000,000원과 제15기에 발생한 25,000,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4. ㈜한국은 외국에 본점을 둔 A사에 해외투자(투자 지분 30%, 투자일 2018년 1월 1일)로 당기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금 액
수입배당금	50,000,000원*
A사의 소득금액	350,000,000원
A사의 법인세액	100,000,000원

- *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, 이에 대한 국외원천징수 세액 5,000,000원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세무조정 시 가산조정 되었음
- 5.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금 액
통합투자세액공제	18,000,000원
연구 • 인력개발비 세액공제	3,600,000원

6.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%이다.

<요구사항 1>

㈜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간접외국납부세액	
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	
외국납부세액공제액	

<요구사항 2>

<요구사항 1>의 정답과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5,000,000원으로 가정하고 ㈜한국의 총부담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감면후 세액	
최저한세	
총부담세액	

【문제 6】(10점)

(**물음 1**) 다음은 2021년 6월 15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 중 주식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- 1. 상속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인 ㈜한국의 주식이며, 상속개시 당시 갑의 보유주식은 50,000주(총발행주식수 125,000주 중 40%에 해당)로 갑은 최대주주이다.
- 2.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㈜한국의 순자산가치는 7,000,000,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.

① 선급비용: 100,000,000원

② 영업권 평가액: 1,000,000,000원

③ 수선충당금: 600,000,000원

④ 퇴직급여충당금: 1,200,000,000원*

* 퇴직급여추계액과 일치함

3. ㈜한국의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3년간의 각 사업 연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으며,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시적, 우발적 사건에 의한 금액은 없다.

구	분	2020년	2019년	2018년
순손	익액	300,000,000원	200,000,000원	140,000,000원

4. ㈜한국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. 순손익가치 계산 시 적용할이자율은 10%,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은 20%이다.

<요구사항>

상속재산인 ㈜한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1주당 순자산가치	
1주당 순손익가치	
1주당 평가액	
비상장주식 평가액	

(물음 2) 다음은 거주자 을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.

< 자 료 >

- 1. 거주자 을은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부친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비상장 내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.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 협회 등록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.
- 2.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을이 해당 주식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없다.

구 분	금 액
주식 취득가액	100,000,000원
취득한 주식의 등록일 현재 가액	500,000,000원*
통상적인 가치상승분	80,000,000원

- *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됨
- 3. 을은 해당 주식이 등록되기 1개월 전 450,000,000원에 전부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다.

<요구사항>

을의 주식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.

(답안 양식)

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금액	
증여재산가액	

- 끝 -

여 백